

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

제정 2021. 12. 21. 의회규칙 제5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,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(이하 “대리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정대리) 의장 또는 보조기관이 결원, 출장, 기타사고(이하 “사고”라 한다)로 인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.

1.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.
2.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.
3.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.

제3조(지정대리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,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.

제4조(책임)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.

부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